

융합 신기술을 채택한 방송통신기기의 대안적 적합성 평가체계 연구: 기술기준 부재의 경우를 중심으로

정회원 이 용 규*, 한 주 연**

Introduction of Alternative Conformity Assessment System for New Radio,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Equipment Without Technical Requirement

Lee Yong-Kyu* , Han Ju-Yeon** *Regular Members*

요 약

방송·통신융합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인증기준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조자가 제품에 대한 출시 승인을 요청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행정처분절차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잠정인증제도(잠정행정처분제도), SDoC와 기술기준의 민간화제도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 SDoC와 기술기준 민간화제도의 도입은 원천적으로 기술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제품의 등장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잠정인증제도는 기술기준이 부재한 경우에 행정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Key Words : Certification, Telecommunication, Privatization, Standard, Regulation

ABSTRACT

In the area of the telecommunication industry, a few products have been developed before related technical regulation has been made. Government agency is forced to make a final decision on whether a requested product is sellable in the market only after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requested product is tested. The introduction of a 'SDoC', and 'privatization of technical regulation' to our legal system could be a solution for minimizing the situation mentioned above. Both 'SDoC' and 'privatization of technical regulation' are systems which are capable of minimizing the appearance of products without technical regulations. Furthermore, 'Temporary approval system' would provide a government agency with administrative procedure for new product without technical regulation.

I. 서 론

지난 수십 년 간 과학기술이 급격히 발전하여 많은 편익을 우리에게 주었으나, 이를 기초로 새로이 탄생된 제품들이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60-70년대에는 단순히 1차 상품에서 2차 공산품으로 소비 패턴이 변화하는 과정이

어서 상품 자체가 단순하여 신체나 생명에 커다란 위협을 주는 제품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산품 중에서도 여러 기능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다기능 상품이 증가하고 있으며 제품 자체의 결함이나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즉, 소비자가 자연적 상품을 소비하는 이전 사회와는 달리 인공

* 이 논문은 2007년도 중앙대학교 연구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james@cau.ac.kr), **중앙대학교 기록관리학과(hina5157@nate.com)

논문번호: KICS2008-10-441, 접수일자: 2008년 10월 4일, 최종논문접수일자: 2008년 12월 11일

적으로 개발된 다양한 상품이나 용역을 향유할 수 있게 된 반면에 이로 인한 생명이나 신체 나이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위해를 입을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소비재로 인한 신체상해 및 사망으로 발생하는 피해액이 연간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다. 소비자 본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생명, 신체의 불훼손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소비자 안전에 대한 보장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이므로, 많은 국가가 판매허가 등 사전규제와 리콜제도 등 사후규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전규제제도를 외국과 비교하여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는 국가이나 최근에는 사후규제제도도 강화하여 2001년 소비자보호법의 개정으로 리콜제도를 강화하였고, 2002년에는 제조물책임법을 시행하여 소비자안전 관련제도를 크게 보강하였다. 국제적으로도 제품의 품질 및 규격 등에 대한 인·허가 관련 규제는 완화되고 있는 반면, 소비자 안전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 방송통신분야는 여타 어느 분야보다도 많은 신제품이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간단체는 소비자가 보다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험 및 인증 제도를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다. 특히,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중통신망에 장애나 위해를 일으키지 않고, 다른 이용자에 대해서도 피해를 주지 않도록 국가가 시장 출시에 앞서 정해진 표준·기술기준과 제품의 실제규격 및 특성이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고 적합한 제품만 판매할 수 있게 하여 소비자와 통신망을 보호함과 동시에 자국의 방송통신 시장도 보호하고 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으로 인하여 복합기기에 대한 인증 건수는 다른 인증 건수에 비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나이가 융합현상과 빠른 기술발전 속도는 인증 요청시 적합성평가기준으로 사용되는 표준이나 기술기준이 부재한 경우를 발생케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VDSL), 비대칭가입자회선(ADSL), 역내광케이블(FTTH)이 인증신청 시점에 표준 및 기술기준이 부재하여 적합성 평가를 실시할 수 없었다.

정부는 표준이나 인증기준의 부재를 이유로 제조자가 시장출시를 위하여 신청하는 인증을 거부하거나 기각할 수 없다. 그 주된 이유는 정부가 표준과 인증기준 제정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제정된 규격에 대한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기술을 마련해야 할 의무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 1. 방송통신기기 유형별 인증 현황

Table 1. The Number of Certified IT Products by Type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검’	20	35	17	18	28	27
‘등’	1,382	1,488	1,642	2,012	1,969	1,567
‘승’	603	517	322	586	376	236
‘전’	5,668	5,556	6,470	6,818	7,757	5,899
‘복’	451	478	439	636	949	818

* 08년도 통계 수치는 9월 29일 기준임.

* 구분에서 ‘검’은 형식검정, ‘등’은 형식등록, ‘승’은 형식승인, ‘전’은 전자파적합등록, ‘복’은 복합기기를 의미함.

현재 인증기준이 부재한 새로운 기술이 내재된 제품에 대한 인증요청이 있으면, 해당관청은 청구권자가 제출한 구조·성능·기타 서류만을 검토한 후 인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완전한 절차를 거쳐 내린 인증은 사업자의 편의만을 고려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와 사업자의 편익을 균형적으로 도모하는 인증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인증기준이 부재한 새로운 기술을 내재하고 있는 방송통신기기가 신속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시장에 출시될 수 있는 인증절차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신기술에 대한 국내의 법적 대응상황은 물론 해외 주요 국가의 대응상황도 분석하고자 한다.

II. 국내의 사례 분석: 현행 법제도를 중심으로

2.1 국내 현황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시장 유통을 위한 인증제도는 대상기에 따라 전기통신기자재는 형식승인, 인명안전이나 선박 항공기에 장착되는 기기는 형식검정, 무선설비의 기기는 형식등록,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 등 전자파에 영향을 받거나 다른 기기에 전자파의 영향을 주는 기기 등은 전자파 등록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방송통신기기의 시장출시를 허용하기 위한 심사절차는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 제6조(심사) 규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형식승인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은 「전파법」 제45조 및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 및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전자파적합등록은 「전파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장해기기의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및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의 전자파로부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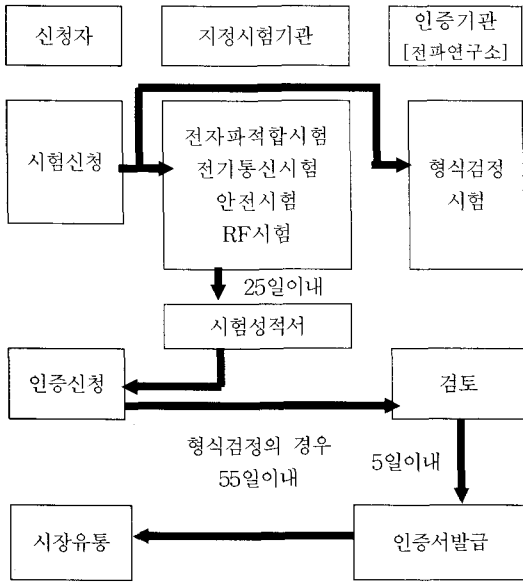


그림 1. 국내 정보통신기기 인증 체계
Fig. 1. IT Products Certification System in Korea

보호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근거로 인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심사절차는 이미 인증기준이 존재하는 제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인증기준이 부재한 제품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사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는 신기술에 대한 인증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재량으로 사업자가 제출한 구조, 성능 및 기타 서류를 검토하고, 제품을 작동해 본 후 커다란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제품 출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2.2 미국

미국의 신기술에 대한 정책은 크게 법제도의 적용면제규정과 인증기준의 민간화로 압축시킬 수 있다. 즉, 인증기준이 부재한 제품에 대하여는 해당 제품이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신기술 내장 제품에 대하여 제조자의 청원에 따라 정부가 제품에 대한 인증 관련 연방통신규정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기술기준 자체가 민간표준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인증기준이나 절차가 부재한 제품이 행정기관에 출시를 요청하는 상황이 원칙적으로 최소화되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2.2.1 규정의 적용면제(Waiver of rules)

미국의 통신법(Communications Act) 제7조 a항

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반 정책을 정부가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의 보급을 위한 청원이 있는 경우 공익의 관점에서 1년 이내에 청원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통신법 제7조 b항). 아울러, 연방통신규정은 민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부가 47C.F.R Part 15 및 18의 무선기기에 대한 규정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47 C.F.R. Part 0.241(a)]. 규정 적용의 면제를 신청한 제품들은 FCC의 심사절차를 거쳐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출시될 수 있으나, 출시조건(유효기간, 갯수, 설치지역 제한, 책임소재 등)은 매우 엄격하다. 아울러, ITU와의 MoU를 통하여 ITU 마크가 붙은 GMPCS 단말장치에 대하여 별도로 허가 및 인증 없이 미국 내에서 판매와 사용이 가능하도록 잠정조치(interim procedure) 취한 적이 있다.

2.2.2 강제표준인 기술기준을 민간표준으로 대체 (FCC Streamlining Order, 99-216)

FCC는 새로운 기술의 시장출시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0년 초에 전기통신단말기기 인증기준(연방규칙 제68장)을 민간표준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현재 제·개정되고 있는 인증기준은 민간표준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이 제정된 이유는 현행 신기술 제품에 대한 규정 적용 면제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규정면제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이 내재된 제품의 조기 시장출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기술기준을 민간표준으로 대체하는 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다. 즉, 민간부문의 신기술에 대한 신속한 대응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술기준이 제정되지 않은 제품이 시장출시를 위한 인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한 조치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기술기준으로 사용되는 민간표준의 유지 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 합동기구인 전기통신단말기기위원회(ACTA:Administrative Council for Terminal Attachment)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ACTA는 전기통신단말기기의 기술기준을 공인표준화단체인 전기통신산업협회(TIA: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등에 의뢰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연방규칙 제68편(CFR Part 68)은 TIA-968 표준으로 전환하고, 추가적 개정수요는 해당 후속시리즈와 별도 표준을 제정하는 것으로 해결한다. 이외

표 2. ACTA가 전기통신 단말장치 기술기준으로 적용하는 TIA 표준 목록
Table 2. TIA Standard List for Telephone Terminal Equipment Accepted by ACTA

제목	명칭	채택일
TIA -1096	Telecommunications--Telephone Terminal Equipment Connector Requirements for Connection of Terminal Equipment to the Telephone Network	2007.3
TIA -968-A5	Telecommunications--Telephone Terminal Equipment - Technical Requirements for Connection of Terminal Equipment to the Telephone Network Addendum 5	2007.7
TIA -968-A4	Telecommunications--Telephone Terminal Equipment - Technical Requirements for Connection of Terminal Equipment to the Telephone Network Addendum 4	2007.3
TIA -968-A3	Telecommunications--Telephone Terminal Equipment - Technical Requirements for Connection of Terminal Equipment to the Telephone Network Addendum 3	2005.2
TIA -968-A2	Telecommunications--Telephone Terminal Equipment - Technical Requirements for Connection of Terminal Equipment to the Telephone Network Addendum 2	2004.3
TIA -968-A1	Telecommunications--Telephone Terminal Equipment - Technical Requirements for Connection of Terminal Equipment to the Telephone Network Addendum 1	2003.9
TIA -968-A	Telecommunications--Telephone Terminal Equipment-Technical Requirements for Connection of Terminal Equipment to the Telephone Network	2003.1

통신법(Communications Act) SEC. 273.[47U.S.273]은 “통신사업자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통신장비와 가입자 구내사용 장비를 제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통신사업자는 전화교환서비스의 사용과 접속을 위한 프로토콜과 기술적 요구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된 표준 개발 기구가 아닌 조직에서 통신장비 혹은 가입자 구내설비에 대한 산업표준을 개발한 경우에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제정하여야 하고, 이를 즉시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2.3 유럽연합

유럽연합(EU)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제품 출시 촉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R&TTE 지침 부록 IV의 유럽연합의 지정기관이 수행하는 기술문서(TCF) 검토 절차는 제품에 적용될 유럽공통표준이 없거나, 기기가 유럽공통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지 않는 기기에 적용한다. 이러한 경우에, 제조자는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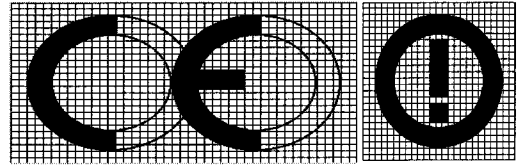


그림 2. 유럽연합의 공통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지 않는 무선기기의 CE표시 형태
Fig. 2. Image of CE Mark for Wireless Equipments Not Using Common Frequency Band of EU

기관(NB)에 제품이 R&TTE 지침 제4조 필수적 요구사항(Essential Requirement)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질의할 수 있으며, 지정기관(NB)이 요청하는 기술문서(TCF)를 구비하여, 인증기능여부를 타진할 수 있다. 지정기관은 CE-Mark가 가능한지 여부를 신청이 있은 후 4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만약, 지정기간이 주어진 기간내에 의견을 제시하는 못하면 제조자는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제조자는 지정기관의 검토가 완료되면 해당 기기에 CE-Mark와 부가표시(원형 경고표시!)를 부착하고 이를 회원국 규제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품에 대한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다.

유럽공통표준이 부재한 기술이나 이러한 기술이 내재된 제품이 있는 경우, 지정기관은 해당 제품에 적용될 수 있는 유럽공통표준의 개발, 공통주파수 대역의 할당 등의 사후조치를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요청하여야 한다. 유럽공통표준이나 공통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지 않고 회원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사용되는 기기에 주로 적용되는 절차는 SDoC Type I와 유사하다. 즉, 공급자는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해 시험을 받아야 하며, 제품을 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규제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공인된 기관에 의한 시험을 거친다는 점에서 순수한 자기적합성 선언제도(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적합성 선언의 주체가 공급자가 된다는 점에서 기존 강제인증제도와는 확연히 구별된다.

2.4 멕시코

많은 국가가 신기술 기기의 시범적 운용을 위한 실험국 허가 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상용기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멕시코는 공인시험 및 인증기관으로부터 멕시코 규격에 적합성을 공식적으로 인증 받지 않은 기기를 대상으로 잠정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 COFETEL(Mexico's Telecoms

Regulator)에 등록된 인증전문가(Pertio)가 업체가 제출한 기술문서의 점검을 통하여 규격 적합여부를 최종 판단하여 잠정적 시장출시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처분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제출서류는 신청기업 공문, 신청서, 인증전문가(Pertio) 확인을 받은 신청제품의 기술문서, 수수료 납입 증명 등이다. 잠정인증처분의 갱신은 기간 만료 전 15일 이내 서면으로 신청하면 되며, 잠정인증을 정식 인증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법인 대표자의 정식인증 변환 요청공문, 신청서, 2인 이상의 인증전문가의 시험성적서 평가결과, 인증신청, 인증서 발급비용 납부 증명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2.5 호주

최근 호주정부는 통신분야의 기술, 서비스 및 통신의 융합화에 따라 종전의 호주 통신청(Australian Communications Authority: ACA)을 방송과 통신업무를 총괄하는 호주 통신미디어청(Australian Communications & Media Authority: ACMA)으로 개편하는 등 전반적인 방송통신 규제체제를 정비하였다. 아울러, 호주의 통신표준화기관도 유사한 조직을 통폐합하여 민간단체인 호주 통신연합(Communications Alliance Ltd: CA)을 창설하였으며, 이 기관은 호주 통신미디어청(ACMA)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정보통신 서비스 및 제품에 적용되는 26개의 산업코드(Industry Code)나 20여개의 호주 미디어청의 표준(ACMA Standard) 초안을 개발하여 반영하였다. 이 기관이 개발한 산업코드나 기술표준 초안은 민간 표준의 수요가 직접적으로 정부의 기술규제의 수요로 연결되어 민간중심의 자율적 규제체제 구축에 일조를 하고 있다.

Ⅲ. 새로운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인증제도 혁신방안

현행 우리나라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인증제도는 기준이 부재한 새로운 제품에 대한 법 규정이 미비하여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사업자에게는 적시에 제품을 시장에 출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새로운 제품의 출시에 따른 이익이 감소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보다 폭 넓은 기기 선택권을 박탈당하고, 신제품에 대한 욕구도 적시에 충족시킬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채택식 즉각적으로 효용성이 나타날 수 있는 “표준 및 기술기준 부재 시 인증절차”와

원천적으로 기술기준이 부재한 제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증기준의 민간화방안”, 제조자의 책임 하에 제품을 출시하도록 하는 “SDoC제도”, “인증 및 행정처분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 등은 새로운 방송통신기기가 신속하고도 안전하게 시장에 출하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3.1 잠정 인증제도 도입

제조자가 제품 시장 출시를 위하여 인증을 요청하였으나, 표준이나 인증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면 해당 행정관청에서 취할 수 있는 대안은 매우 제한적이다. 즉, 유일한 대안은 법적으로 행정처분 소요 기간인 5일 이내에 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제품을 시험하고 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인증기준을 마련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행제도를 보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신기술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제품에 대한 인증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 인증기준의 부재를 인지한 후 즉시 신청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향후 해결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한다. 첫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인증기준을 주어진 기간 내에 제정을 하고, 이를 토대로 인증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현행 “방송통신기기 인증규칙” 제15조는 인증신청이 있는 경우, 전파연구소 소장은 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이나 인증기준에 소요되는 기간이 통상적으로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주어진 5일 이내에 관련 기준과 절차를 제정하여 인증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단기간 내에 인증기준을 제정할 수 있으면, 이를 토대로 시험하고 인증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둘째, 주어진 기간 내에 표준이나 기술기준을 제정할 수 없다면, 관련 국제표준 혹은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임시적으로 제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잠정 인증을 하는 것이다. 기술에 대한 국가 표준이나 기술기준이 부재한 경우에도 국제표준이나 단체표준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은 우선적으로 국제표준이나 단체표준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이의 부합여부를 토대로 잠정적으로 인증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잠정 인증이란 기술기준이 제정될 때까지만 유효한 인증을 의미한다. 따라서 잠정인증을 받은 제품은 본 규정이 마련되면 이에 따라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셋째, 첫 번째와 두 번째 방안이 적용되기 불가능한 상황이면 제조자가 제출한 제품의 구조·성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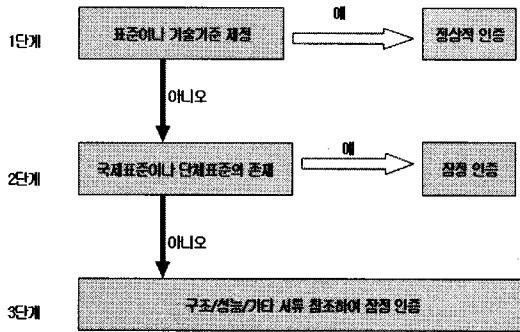


그림 3. 표준 및 기술기준 부재 시 인증절차
Fig. 3. Administrative Certification Procedure for New IT Products

· 기타 서류만을 참조하여 해당 관청이 잠정적으로 인증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논의된 3단계까지가 잠정인증과 관련된 절차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해당 관청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인증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며, 해당 관청은 잠정인증을 받은 제품의 제조자에게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을 것을 통보하여야 하고, 제조자는 이에 따라 정상적 절차를 거쳐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잠정인증 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사안으로 해당 정부기관과 사업자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잠정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중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태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증기준이 부재한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행정기관은 전문가 회의 및 공청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

3.2 기술기준의 민간화 제도 도입

표준은 강제성여부를 기준으로 강제표준과 임의표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술기준은 법에 근거를 두고 제조자에게 표준의 준수를 강제화하는 강제표준이며, 민간표준은 대체로 민간이 제정한 것으로 법적 준수를 강제화하지 않는 임의표준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강제표준은 법적 근거를 명확히 갖추어야 하므로, 제정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반면에 민간표준의 제정은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적게 소요되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기술기준이 제정되지 않은 제품일지라도 이와 관련된 국제표준 혹은 단체표준은 이미 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기술기준을 민간표준으로 점진적으로 대체하면 기술기준이 부재한 제품의 등장이 근본적으로 최소화될 수 있다. 소비자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위해도가 낮은 기

기부터 민간표준을 기술기준으로 대체하는 입법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민간표준이 기술기준이 되는 사례가 제한적이지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전파법의 일부 규정(법 제39조 2항, 시행령 63조)에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규칙(ITU Radio Regulation)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후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민간표준을 인증기준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3 SDoC 제도 도입

자기적합성 선언제도(Self Declaration of Conformance 혹은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ance, SDoC)는 시장에서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가 제품이나 그 공정, 그리고 서비스가 규정된 요구사항들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보장하는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제조자가 스스로 자기 제품이 해당 기준(일반적으로 IEC, ISO 등 국제규격)에 적합하지 여부를 스스로 평가하여 보증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방송통신기 분야 중 SDoC 제도 도입이 용이한 분야는 제품 자체 혹은 제품 활용상에 있어서 위해 정도가 대체로 낮은 경우, 제품의 위험성 관련 정보습득이 용이하여 사고 발생 수준이 낮은 경우, 사후관리 부적합률이 낮은 경우, 국제기준과 정합성이 높은 경우이다.

SDoC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적합성 평가에 수반하는 각종 경제적 비용을 감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규제자의 관점에서는 적합성 평가에 수반되는 행정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공급자의 관점에서는 인증비용을 절감하게 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증기관에 관한 선택의 폭이 확대되어 기업 운영에 있어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 다른 한편, 자기적합성 선언제도를 도입하면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므로 시장 감시 시스템의 도입 등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한 후에 SDoC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가 완비된 후에는 많은 장점을 가진 SDoC 제도를 인증기준이 부재한 신제품에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3.4 인증 및 행정처분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

우리나라의 경우, 인증과 행정처분에 대한 용어가 명확한 개념 정립 없이 사용되고 있어 상당한 혼란을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방송통신기에 대

하여 형식검정, 승인, 등록 등 행정처분에 대한 근거법인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상기 법규는 인증과 형식검정·등록·승인 등 행정처분 간의 법적 차이점을 혼돈하고 있다. 인증이란 통상적으로 제 3자가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한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행위이다. 반면에 형식검정, 등록, 승인 등의 행정처분은 제품의 시장 출시를 위하여 요구되는 법적 요건이다. 즉, 형식검정, 형식승인 등은 인증여부에 근거하여 해당 기관이 제품의 출시를 승인하거나 불허하는 행정처분행위이다. 그러므로 인증과 행정처분간의 관계는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인증과 행정처분에 대하여 정부기관이 취할 수 있는 법적 행위는 매우 상이하다. 즉, 제조자가 특정한 제품에 대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표준이나 인증기준의 부재를 이유로 해당 기관은 인증을 거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증이란 제품이 특정한 규격 등을 적합하게 갖추었다는 표시이므로 제품에 대한 표준이나 인증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준이나 인증기준 부재 시 인증기관은 인증서를 원칙적으로 발급할 수 없다.

다른 한편, 제조자나 유통업자가 제품의 시장 출시를 목적으로 새로운 제품에 대한 형식검정·등록·승인 등의 행정처분을 신청한 경우, 관할 업무처리 행정기관은 표준이나 기술기준의 부재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정부가 표준과 기술기준 제정의무와 제정된 규격에 대한 제품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기술을 갖추어야 할 의무를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제조자로부터 시장출시를 위한 행정 처분 승인을 요청받은 해당 행정기관은 특정 제품에 대하여 형식 검정·등록·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명백한 법률적 근거가 없으면 신청자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표준이나 인증기준이 부재한 제품에 대한 인증이나 잠정인증제도 자체가 법제도상으로는 불가능하다. 단지 새로운 기술기준이 마련되어지질 기간 동안까지 잠정적으로 형식검정·등록·승인을 하여 주는 경우를 잠정행정처분이라고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행 「방송통신기기 인증규칙」은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 등에 관한 규칙」이라고 표현하여야 보다 올바른 것이다.

3.5 신제품에 대한 새로운 인증절차의 유용성

잠정인증제도, 기술기준의 민간화 방안 및 SDoC 제도 도입 등에서 얻을 수 있는 유용성은 매우 다양하나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3.5.1 첨단 기술정보 수집과 활용의 용이성

기술기준의 민간화, SDoC 제도 등을 도입하게 되면 정부의 측면에서는 기업과 전문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신기술에 대한 표준제정이나 인증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적은 비용으로 신기술에 대한 표준제정이나 인증에 필요한 첨단 정보수요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측면에서는 신속하게 제품을 출시할 수 있어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3.5.2 규제제도에 대한 기업 순응성 확보의 용이성

기술기준의 민간화, SDoC제도 등을 도입하게 되면 인증정책에 대한 기업의 순응성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다. 정부는 행정력의 부족으로 관련 업체의 규제에 대한 순응 여부를 상세히 파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기관이 직접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관련 기관이나 협회 등으로 하여금 스스로 규제하도록 하여, 규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3.5.3 신속한 신제품 시장 출시에 따른 사업자와 소비자의 편익 제고

잠정인증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사업자는 신속하게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어 매출 증대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며, 소비자는 다양한 신제품을 신속히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 잠정인증제도 등을 도입하여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행정기관과 사업자간의 분쟁 혹은 제품사용 중 예기치 못한 사고의 발생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최소한의 안전성은 검증한 후에 잠정인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술기준의 민간화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민간표준을 제정하는 협회 등의 기관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재정적 지원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아울러, SDoC 제도를 도입하면 자율적 확인제도를 악용하여 정부 규제를 회피하려는 제조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후규제제도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IV. 결 론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새로운 방송통신 기기의 출시 기간이 점차 단축되고 있다. 따라서 간혹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인증기준이 없는 제품이 출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법적 대처방안이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인증기준이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은 다양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잠정인증제도의 도입이다. 현행 우리나라 법제도는 신기술에 대한 인증절차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인증기준이 존재하지 않은 유무선기기에 대하여 사업자가 해당 행정기관에 대하여 시장 출하를 위한 인증과 이를 토대로 한 형식검정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지 구조 및 성능 시험과 기타 서류를 점검한 후 시장출하를 허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잠정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주어진 기간 내에 표준이나 기술기준의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 국제표준이나 단체표준이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후에 최종적으로 인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둘째, 기술기준의 민간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술기준은 법적 강제표준이어서 제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가 민간임의 표준과 비교하여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표준제정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능력과 신뢰성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향후 기술기준을 점진적으로 민간표준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민간의 활력과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원칙적으로 인증기준이 부재한 제품이 등장하는 경우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SDoC 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SDoC 제도를 도입하면 인증기준이 부재한 제품의 등장이 자연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 EU 등 FTA 상대방 국가에서 우리나라 인증제도에 SDoC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위해도가 낮은 방송통신기기부터 SDoC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방송통신기기의 인증과 관련된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사용하여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인증과 행정처분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신기술에 대한 인증과 행정처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되면 제조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많은 편익을 제공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우선, 제조자는 인증기준이 부재한 새로운 기술을 사용한 제품을 시장에 출하하기 위하여 거쳐야 할 절차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게 되어 일정기간동안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소비자는 신제품을 신속하게 접할 수 있게 되어 제품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새로운 인증제도가 가지고 있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도입시점은 사후관리제도 강화 등 해당 기관의 준비상황 등을 보아가면서 결정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 [1] 구제길 외, “정보통신 해외인증제도 조사, 분석 연구”, 전파연구소, 2006.
- [2] 백종현 외 2인, “최근 개편된 호주의 민간 ICT 표준화 운영체제에 대한 고찰”, 한국통신학회 춘계학술대회, 2008.
- [3] 중소기업진흥공단, “국내외 주요 인증제도”, 2003.
- [4] 한국규제학회, “자기적합성 선언제도의 도입 방안 및 시기에 관한 연구”, 2007
- [5] 한국전파진흥원, “소비자보호를 고려한 인증 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7.
- [6] ANSI, “Standards and Conformity Assessment Bodies of the United States”, 2006.
- [7] Goerge Tannahill, “Introduction to FCC Rules and Equipment Authorization Program”, FCC Office of Engineering Technology, Laboratory Division TCB Workshop, October. 2005.
- [8] Kiemel, “EMC Authorization of Wireless Devices in the US and EU”, ICCS EMC Society: Minneapolis Chapter Meeting, 2004. 6
- [9] NIST, “The U.S. Certification System from Government Perspective”, NISTIR, 6077.1997
- [10] NIST, “Directory of U.S. Private Sector Product Certification Program”, 2001.
- [11] OECD(ICCIP 27), “Telecommunications Type Approval: Policies and Procedures for Market Access”.

<법령>

미국, Telecommunications Act, 1996

_____, FCC, 47 CFR Part 0, 15, 18

_____, FCC Streamlining Order, 99-216

유럽, EU R&TTE Directive
한국, 전기통신기본법
____, 전파법
____,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과적
합등록에 관한 고시
____, 방송통신기기 형식승인 고시
호주, Communications & Media Authority Act,
2005
____, Telecommunications Act, 1997
<웹사이트>
<http://www.europa.eu.int>
<http://part68.org>

이 용 규 (Lee Yong-Kyu)

정회원



1983년 2월 중앙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1985년 8월 후로리다 주립대학
교(FIU) 행정학 석사
1989년 12월 후로리다 주립대
학교(FIU) 행정학 박사
1989년 9월 미국 Seton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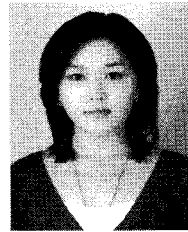
University 정치학과 교수

1991년 3월-현재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관심분야> 정보통신정책

한 주 연 (Han Ju-Yeon)

정회원



2008년 2월 중앙대학교 행정학
과 학사

2008년 3월-현재 중앙대학교
기록관리학과 석사과정

<관심분야> 정책과정